

	<h1>연암공과대학교 학칙</h1>	문서번호	YIT-A-0010
		제정일자	2012.07.01
		개정일자	2025.08.01
		페이지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연암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2.26.개정»

제2조(교육목적 및 목표) ①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직업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2016.2.26.개정»

② 본 대학교는 근면성실하고 유능한 중견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연암공과대학교라 한다.«2016.2.26.개정»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629번길 35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2015.8.1.개정»«2016.2.26.개정» «2016.12.1.개정»«2017.2.1.개정»«2018.12.1.개정»«2019.11.1.개정»«2021.4.2.개정»«2022.7.1.개정»«2024.2.1.개정»«2025.8.1.개정»

① 2년 또는 3년 과정

모집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정원	모집유보 후 입학정원 ('26~'28)
		주간	주간	주간
전기전자공학과	2년	150	15	135
기계공학과	2년	170	30	140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3년	57	6	51
스마트기계공학과	3년	34	-	34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3년	60	5	55
자유전공학과	3년	25		25
합 계		496	56	44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칙<2025.8.1. 시행>에 의한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개정 2014.12.01.>«2017.2.1.개정»«2018.3.1.개정»«2018.12.1.개정»«2021.4.2.개정»«2024.2.1.개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주간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1년	40
합 계		40

제 2 장 직 제

제6조(조직)①본 대학교의 조직 및 기구는 “직제규정”에 의한다. «2016.2.26.개정»«2019.3.1.개정»«

2020.6.22. 개정»«2021.4.2.개정»«2023.3.1.개정»«2024.2.1.개정»«2025.8.1.개정»

② 각 처에는 처장을 두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025.8.1.개정»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산학협력단 설치) ① 본 대학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2016.2.26.개정»«2025.8.1.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 본 대학교에는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2016.2.26.개정»«2019.7.1.개정»

제9조(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강사) ①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 강사를 둘 수 있다.«2019.7.1.개정»

② 전 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9.7.1.개정»

제10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2025.8.1.개정»

③ 행정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1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2016.2.26.개정»

② 3년제 학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2013.7.15.개정»

제12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재학연한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3조(학년도) ① 학년도 단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 개시 일은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로 한다. «2021.3.1. 개정»

제14조(학기) ① 학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서 하며, 학기별 세부일정은 총장이 조정 할 수 있다.«2013.10.1. 개정»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인턴십/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2013.1.1. 개정»

④ 현장실습, 인턴십/실습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3.1.1.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2019.11.1. 신설»

제1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5조의2(집중이수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9.11.1. 신설»

제1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토요일, 일요일
3. 개교기념일 : 5월 9일
4.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대학 비상운영)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학사 및 수업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20.3.1. 신설»

제 5 장 입학

제18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년도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9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0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1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시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한다.

제21조의 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제21조에 의하여 선발할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03.25»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3.25.»

제22조(입시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시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25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を 취소한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6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 ② 전문대학 및 대학 2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3학년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편입학 심사에서 통과하면 기 취득학점의 조정을 받아 편입학할 수 있다.

제28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16.2.26.개정»

- ② 재입학은 각과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 ③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자는 해당 학과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5.8.1.개정»

제 6 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전공배정) 전공배정의 시기, 신청, 기준, 인원 등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 2(융합전공) 융합전공 이수 희망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9.11.1. 신설»
2025.8.1.개정»

제30조(전과) ①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위탁과정의 전과는 불허한다.«2013.1.1. 개정»
«2013.10.1. 개정»
«2025.8.1. 개정»

- ② 전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의2(자유전공학과 전공배정) ① 자유전공학과의 전공배정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 자유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5.8.1.신설»

② 자유전공학과의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과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2025.8.1.신설»

제31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2013.10.1.개정»«2019.7.1.개정»«2025.8.1.개정»

② 1회의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7.1.개정»

③ 휴학은 입영휴학, 질병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④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32조(복학) 제31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수속 및 등록을 마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33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5.8.1.개정»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2013.10.1. 개정»

1. 휴학기간 종료 후,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5.8.1.개정»
3. 삭제 «2025.8.1.개정»
4.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5. 품행이 극히 부적절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25.8.1.개정»
6.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024.9.1. 개정»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나눈다.

② 학점배점 기준은 개설학점에 대해 교양교과 15%~20%이내, 전문교과 80%~85%이내로 하고, 전문교과의 50%는 실험실습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문식/트랙,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필요한 경우 교양교과 및 전문교과는 5%, 실험실습 부과비율은 1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6.12.1. 개정»«2022.9.1. 개정»

③ 현장실습, 인턴십/실습학기제의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3.1.1. 개정»

④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3.1.1. 개정»

⑤ 세분화한 전문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Micro)디그리, 나노(Nano)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2.9.1. 신설»

제36조(교육과정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계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7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2013.10.1. 삭제»
 - ③ 매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2013.1.1. 개정»
«2013.10.1. 개정»«2019.3.1. 개정»
 - ④ 수강신청 제한의 예외 사유 발생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3.1.1. 개정»«2013.10.1. 개정»«2021.11.1.개정»

- 제38조(학점인정)** ①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범위는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2014.10.1.개정»
- ② 항 삭제«2014.10.1.개정»
 - ③ 항 삭제«2014.10.1.개정»
 - ④ 해외현장실습은 사전/사후 교육을 포함하여 16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한다. «2014.10.1.개정»«2023.10.1.개정»

- 제38조의2(특별학점)** ① 본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게 특별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8.1.»
- ② 특별학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1.»

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원격병행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1.»
- ② 매 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0: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개시 시간은 산업체의 근무시간 종료 이후로 한다. «2025.8.1.개정»

- 제41조(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1조의 2(원격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2021.3.1. 신설»
- ②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1.3.1. 신설»

- 제42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전임교원의 책임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의 교수시간은 따로 정한다.«2019.7.1.개정»«2025.8.1.개정»
 - ③ 교수시간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4조(출석인정) ①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조기취업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예비군법 제10조의 2(학업보장)에 의거하여 예비군 훈

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원이 그 기간에 대해 결석 처리 등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2016.12.1. 개정»«2024.2.1. 개정»

②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5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조기취업자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6.12.1. 개정»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2025.8.1. 개정»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물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교과의 성적평가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표와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이수 과목은 P를 급제로 한다.

③ 성적평가 임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④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나 중간고사 이전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B0이하로 부여한다. 단, P/NP 교과목은 제외한다.«2016.12.1. 개정»«2025.8.1. 개정»

등 급	배 점	평 점
A+	95점 이상	4.5
A0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B+	85점 이상 90점 미만	3.5
B0	80점 이상 85점 미만	3.0
C+	75점 이상 80점 미만	2.5
C0	70점 이상 75점 미만	2.0
D+	65점 이상 70점 미만	1.5
D0	60점 이상 65점 미만	1.0
OF	60점 미만	0.0
P	Pass	불 계

제48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수강신청 후 취득한 성적

3. 출석 미달과목의 성적
4. 성적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제49조(졸업 및 수료)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춘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2년제 학과는 76학점(전공교과 50학점 이상 포함), 3년제 학과는 114학점(전공교과 75학점 이상 포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취득인정학점 포함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2019.3.1. 개정»«2021.11.1.개정»

③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11.1.신설»

④ «2025.8.1. 삭제»

⑤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2019.3.1. 개정»

1. 1학년 수료 : 38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6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4학점 이상(3년제 학과에 한함)
4. 4학년 수료 : 취득인정학점포함 130학점 이상

제50조(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자는 수강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평생교육

제51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2016.2.26.개정»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2016.2.26.개정»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52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에서 2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2025.8.1. 개정»

② 입학자격은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의 경우,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동등 학력자 포함)하고 관련 분야의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하고,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학과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사항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2016.2.26.개정»«2025.8.1. 개정»

③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본 대학교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은 제5조와 같이 설치·운영 한다.«2016.2.26.개정»

② 전문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 1-3호에 의하여 별표 1-2호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①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016.2. 26. 개정»

-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은 당해 총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고,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출신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 등을 전형자료로 한다.
- ⑤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규 학생의 납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⑥ 시간제등록생의 최대이수 학점은 정규학생의 매학기 최대 취득가능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 ⑦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제55조(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학생의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퇴학, 휴학과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2016.2.26.개정»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56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학생활동의 금지) 삭제 «2025.8.1.개정»

제59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한다. «2025.8.1.개정»

②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삭제 «2025.8.1.개정»

제61조(간행물 발행) 삭제 «2025.8.1.개정»

제62조(처벌) 삭제 «2025.8.1.개정»

제 11 장 규율과 상벌

제63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4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급중지를 원칙으로 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결석) 삭제 «2025.8.1.개정»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2013.10.1. 개정»

- 1.학칙을 위반한 자.
- 2.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무계출 결석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3.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심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4.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8조(성차별대책위원회) ① 성희롱예방등 남·여 차별 방지와 고충처리를 위하여 성차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성차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등록금

제6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등록금 심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1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등록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 13 장 교수회 및 기타위원회

제72조(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2016.2.26.개정»

제73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다음의 소집 요청에 의해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1.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직 전임교원(조교수 이상)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3. 교무위원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5.6.27. 개정»
2. 교수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4조(평의원회) 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며,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4조의2(기금운용심의회) 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22.3.15. 신설»

제75조(교무위원회) ①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2016. 2.26.개정»

②교무위원회의 구성은 총장, 각 처장, 산학단장, 각 학과장, 부속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직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과, 전공 및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학칙, 학사규정, 제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025.8.1.개정»
 -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삭제 «2025.8.1.개정»
 - 전과, 재입학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시험에 관한 사항 삭제 «2025.8.1.개정»
 -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삭제 «2025.8.1.개정»
 - 장학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삭제 «2025.8.1.개정»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6조(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 구성) ①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교육과정편성표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처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한다.

1. 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2. 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업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4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7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필요 시 교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제78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견제출 및 처리)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 15 장 부속시설 등

제81조(부속시설 등) ①본 대학교에는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시설 등을 두며, 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2013.10.1. 개정»«2016.2.26.개정»«2017.2.1.개정»«2019.3.1. 개정»«2020.2.1. 개정»«2020.4.1. 개정»«2020.6.1.개정»«2020.9.1.개정»«2022.3.15. 개정»
②부속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2.3.15. 개정»

제 16 장 자체평가

제82조(자체평가 실시) ①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는 격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자체평가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장 기 타

제83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① 총장은 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제 29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및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의거 장애 학생 을 지원 한다.
②장애학생지원규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장애학생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2.7.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 제11조(수업연한) ②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종전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3년 2월 28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현소속	변경소속
전기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정보계열
디지털전기전자과	전기전자정보계열
기계설계과	기계조선자동차계열
컴퓨터응용기계과	기계조선자동차계열
산업정보디자인과	산업정보디자인계열

부 칙<2013.2.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5.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 제11조(수업연한) ②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기계조선자동차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4년 2월 28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소속으로 한다.

부 칙<2013.11.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14조(학기), 제30조(전과), 제31조(휴학), 제34조(제적), 제37조(학점이수), 제67조(징계)의 개정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학기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이전에 휴학하여 복학 일정이 변경된 학기제와 맞지 않는 4학기제의 2학기 및 4학기 복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2014.10.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종전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현소속	변경소속
컴퓨터응용기계계열	기계조선자동차계열
스마트융합학부	스마트융합계열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스마트융합계열

부 칙<2014.12.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소프트웨어과는 2013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2016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2015.3.25.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은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종전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6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과 소속으로 한다.

현소속	변경소속
전기전자정보계열	전자전기계열

부 칙<2016.3.1. 시행>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 시행>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치학과 변경 및 학과 분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스마트융합계열에 재적중인 학생 중 2019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학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과명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 ②이 학칙 시행당시 스마트융합계열에 재적중인 학생 중 2019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교과과정이 유사한 아래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아 래 =

현소속	변경소속
스마트융합계열 SW전공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융합계열 EV전공, EM전공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③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조선자동차계열 재적중인 학생 중 201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7.2.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②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 시행>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산업정보디자인계열 입학정원 모집증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을 시행하면서 산업정보디자인계열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조치를 한다.

- ①2019학년도 모집 중지한 산업정보디자인계열은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정보디자인계열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2년 2월 28일까지 학과를 운영한다.
- ②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괄 전과를 지원하며,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휴학에 따른 복학생이 발생하여 산업정보디자인계열의 졸업을 원할 경우,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부 칙<2019.3.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졸업 및 수료)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변경 전 졸업학점을 적용하며,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변경 전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아 래 =

소 속	변경 전 졸업학점	변경 후 졸업학점
전자전기계열	80	76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	80	76
산업정보디자인계열	80	76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120	114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120	114
기계공학과	120	114

②(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졸업유보자는 최초 졸업 성적사정의 졸업학점 기준을 적용한다.

③(최대수강신청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항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학생은 23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부 칙<2019.7.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6.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2020.6.22.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소급시행한다.

부 칙<2020.9.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종전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21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과 소속으로 한다.

현소속	변경소속
전자전기계열	전기전자공학과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스마트기계공학과

부 칙<2021.11.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15.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하며, 모집유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15호, 2022. 5. 16.시행)에 의한다.

부 칙 <2022.9.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행정조직 개편의 시행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10.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제6조(조직) ①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4.9.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6.27.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1. 시행>

1.(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하며, 모집유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의한다.

(별지 1-1호)

제 호

학 위 증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

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

(별지 1-2호) «2025.6.27. 삭제»

(별지 1-3호)

제 호

학 위 증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20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
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

(별표 1-1호)

학과	학위	비고
전기전자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기계공학과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스마트기계공학과		

(별표 1-2호)

학과명	학위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별지 2호)

제 호

수료증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